



산업단지 개발 관련 유동화 현황 및 신용평가지 유의점

김효경
SF 3실 책임연구원 | 02-368-5568 | hkkim@korearatings.com

Summary

2013년 말 부정한 보증행위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가 주춤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유동화가 재개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유동화 구조 전반에 걸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 체계는 크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왔으나, 2008년 이후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은 종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소요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법률 제정으로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투자심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자기관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을 신용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권절차의 적정성 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권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담은 유동화 구조상 신용보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무 이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다.

I. 들어가며

지방채 발행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및 2013년에는 이러한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 말 부정한 보증행위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가 주춤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유동화가 재개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한 법률체계 및 절차, 산업단지 관련 유동화 현황,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정성을 위한 관리 방안, 산업단지 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절차, 신용평가지 유의할 점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유동화 구조 전반에 걸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산업단지 관련 유동화 현황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의무 부담 구조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에게 신용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지방 재무회계상으로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차입하는 경우 자금조달 시점부터 부채항목에 계상되어 재무비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부채계상을 상당기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상당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용보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동화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유동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산업단지 개발¹⁾시, 시행사의 대출채무 또는 신탁수익권의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전액 민간자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자본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앞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출자비율의 합이 2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표1] 산업단지 관련 유동화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1	3	6	6	-	1	2
대출/보증한도(억원)	1,000	4,350	6,962	12,644	-	980	2,084

주) 1. 당사에서 평가한 건만을 집계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대출약정 혹은 사업약정이 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기 시작한 건임.
2. 지방공기업이 신용보강한 것은 총 3건임.

III.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 체계 및 절차

1960년대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기틀 마련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과거 공단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법들이 정비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양대 체계로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이 통·폐합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례법 적용대상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1천만m²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²⁾나 그 외 사업시행자가 5백만m²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특례법 적용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해야 하나, 민간 기업 등이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지정시 산업법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산업법, 특례법, 산집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유동화를 통해 자금조달이 진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특례법의 적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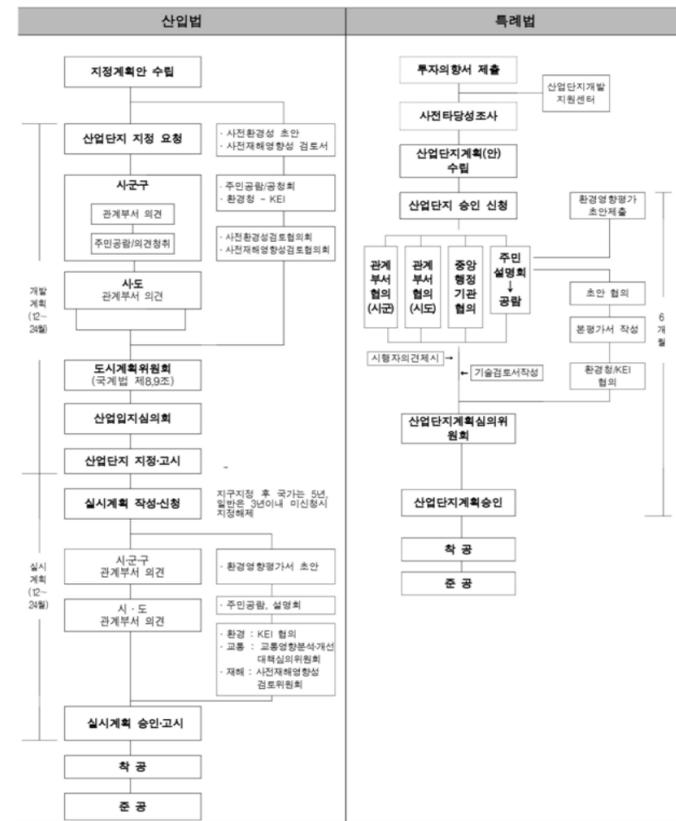
[표2] 산업법과 특례법

구분	산업법	특례법
인·허가 단계	2단계 절차: 지정(개발계획)승인 → 실시계획 승인	1단계 절차: 산업단지계획승인
인·허가 소요시간	2~4년	6개월 이내
적용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km ² 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km ² 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km ² 미만 산업단지 개발사업 2. 그 외의 사업시행자: 5km ² 미만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례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단축

특례법은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요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법에 의한 종전의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종적으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특례법에 의한 절차는 각각의 유사절차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횡적으로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법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계획수립이 시급한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특례법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사전변경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였다.

[그림1] 산업법 및 특례법의 절차



IV.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및 지방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2013년 11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발표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보증행위에 대해 지적했고, 2013년 12월 행정자치부는 통합부채 관리체계³⁾ 구축 및 지방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1.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관리

2014년 11월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87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가 포함되어야 하고,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초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 보고서 작성지침’을 내려 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향후 예산수립,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총괄 관리하고, 그 대상에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포함되는 부채관리체계를 의미함.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⁴⁾법 개정을 통해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동 조항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시행되었다. 신설 조항의 시행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새로운 구조로 차환을 추진하거나 지방공사가 상환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방공사가 해당 채무보증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동일한 구조로 차환이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V. 산업단지 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유동화 추진시 산업단지 개발절차 점검 및 수권절차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5의 시행으로, 지방공사가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구조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새로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부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기존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부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가 2014년 개정되어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성됨.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이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임. 지방직영기업은 예·결산이 지방의회에서 승인되며, 조직과 인력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반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예·결산이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등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 예를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직영기업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사에 속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을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⁵⁾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행정자치부 장관은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

투자심사는 대상사업의 규모 및 추진 주체에 따라 자체심사, 사·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된다.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절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⁶⁾(이하 ‘본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의미하고,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 체결 후 6개월 이상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정책적 필요성,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투자심사의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표3]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구분	구분 기준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정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5.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6.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참고.

3.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련 유동화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채권 및 수익권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자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과 관련한 적절한 수권을 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기관의 상환보증)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환을 포함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범위)

법 제2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출자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VI. 지방자치단체의 수권절차 확인

수권절차의 적정성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을 신용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권절차의 적정성 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부담 행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권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담은 유동화 구조상 신용보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무 이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할 경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적기 상환을 위하여 기한이익 상실 시점과 유동화증권 상환 시점 간에 일정한 기간을 확보하는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자·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 2.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